

검 토 보 고 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 주 시 의 회

전문위원 김형열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조례 개정 이유는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감면규정은 별도 조례가 있으므로 본조례
에 포함된 부분을 정리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사용하는
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구판사업등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시세의 부과
징수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시세조례」에서 정하

였으나, 이를 별도의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가 있으므로 구판사업등 사업의 내용인 「양주시 시세조례」 제32조를 삭제하고 「양주시 시세 감면조례」에 삽입하므로서 시세 감면시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함에 대하여 부과 세율을 본 조례안 제43조 제1항에서 종전의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상향하므로서 48%상당의 주행세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 주행세율을 일시에 대폭인상하는 사항이나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본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하여 근거를 규정함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